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소상공인 재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신금융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홍보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소상공인 스마트화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명)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행정·공업·전산·통계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5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3명(5급 3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2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각각 “2023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3 중 총계 “469”를 “475”로 하고, 일반직 계 “463”을 “46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1”을 “16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6”을 “138”

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69”를 “475”로 하고, 일반직 계 “463”을 “469”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2”를 “175”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8”을 “13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2”를 “2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22”를 “2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1.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시설사 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2. 제2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시설사 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3. 제20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시설사 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4. 제2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전산사무관, 통계사무관, 시설사 무관, 방송통신사무관,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한시정원) ① 대학의 창업 <u>활성화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u> <u>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u> <u>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u> <u>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u> <u>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u> <u>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u> <u>정원 1명(행정사무관 · 공업사</u> <u>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u> <u>·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u> <u>·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u>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u> <u>충원해야 한다.</u> ②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u> <u>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u> <u>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u>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u> <u>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u> <u>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u> <u>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u>	제20조(한시정원) <삭 제> ② ----- ----- ----- ----- <u>2022년 2월 28일</u>----- ----- ----- ----- -----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철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

-----.

③ -----

2023년 2월 28일-----

-----.

④ -----

----- 2023년 2월 28일-----

관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 설>

-----.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69</u>	• <u>475</u>	+6
일반직 계	• • <u>463</u>	• • <u>469</u>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 <u>161</u>	• • <u>164</u>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 <u>136</u>	• • <u>138</u>	+2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9	475	+6
일반직 계	463	469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2	175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28	130	+2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u>22</u>	<u>2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전산 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u>22</u>	<u>2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u>	<u>7</u>	-1